

#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해결방안

- 김정진/공학박사, 기술사 -

최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각종 건설공사나 채석장 등에서 유발되는 소음·진동이 가축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설 비행장에서 항공기 이착륙음, 군부대 등의 중무기 이동 및 사격연습 등으로 유발되는 소음·진동에 의한 관련민원이 매항리 사건 이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같이 소음·진동 유발 당사자와 양측 사이의 분쟁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미흡하고 전문가나 사안별로 해결 방안이나 피해 판정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피해분쟁을 심화시키고 불합리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법령에서의 규제기준이 인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소음·진동에 훨씬 민감한 가축에 적용시킬 수 없고,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개념과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량적 개념으로 확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생원 및 피해 대상물의 각 영향 인자별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피해양성이 워낙 다양한 것도 한 이유이다.

예를 들면 발생원의 물리적 특성 외에도 가축화의 진행정도(잔여 야생성), 품종, 연령, 수태여부, 평시 사양관리 형태 등에 따라 외부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도가 다르고 암소음·암진동 수준, 기후 등과 같은 축사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도 사

양 가축의 반응도 및 피해수준은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일단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위해요인이 가축에 스트레스를 가하여 번식장애를 초래할 경우 도태로 인한 생산기반의 손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므로 피해의 규모가 확산되는 특성이 있고, 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축산농민은 물질·정신적 피해로 심각한 좌절상태에 빠져 또다른 피해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통상 공사현장 인근에 축사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공사 관계자)가 사전에 현황 조사 및 예측평가를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법선정 및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축산농가와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발파, 항타, 그외 건설장비 가동으로 가축이 놀라 날뛰다가 유산을 일으키거나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서 공사현장에 항의하거나 발주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서야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막상 협상에 임하여 보면 양쪽 다 이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시공사는 공사비 범위내에서 처리할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쉽게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의 가축 피해분쟁에 대한 처리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피해농가 및 시공사에게 참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속한

합의 도출을 유도하여 쌍방이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있다.

먼저 공사전 사전 예측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피해보상액 산출 혹은 공사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에는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결과를 쌍방이 수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전문 평가기관은 소음·진동 계측 및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와 가측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소요기간은 대략 1~2개월로 상대적으로 처리기간이 짧고 분쟁 당사자가 평가결과를 놓고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평가기관 선정문제 및 평가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평가기관은 민원인이 선정토록 배려하고 평가 용역비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게 대부분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 설명회를 통해 상호합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평가기관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하는 행정기관으로의 중재신청이나 소송으로 갈 경우를 대비한다면 평가기관의 선정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는가"가 승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정부의 중재기관을 통한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쌍방의 소명 자료를 취합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재정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재정결과를 양측이 받아들

인다면 분쟁이 종결될 수 있으나 어느 한 쪽이라도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진다.

판정까지의 소요기간은 대략 4~6개월 정도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행정기관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여건상 환경관련법에 적용되는 피해에 국한되고 또한 재정신청 당시 일어난 피해현상에 대해서만 주로 중재를 받기 때문에 완전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피해 발생시 마다 재정신청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최종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송은 집행의 강제적 효과가 분명한 장점은 있으나 분쟁해결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길고 성실하고 유능한 법정 대리인(변호사 등)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축산 농민의 입장에서는 치열한 법률공장을 주고받은 끝에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경우 인력과 재력 동원 능력이 취약하여 중간에 포기하거나 당초보다 상당히 손해보는 입장의 합의를 종용받기도 한다.

건설현장에서 민원과 관련하여 올바른 분쟁처리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공사(혹은 발주 및 감독기관)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원인은 무리한 요구를 지양하고 합리적 절차에 의한 상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상호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나 부당한 이익을 보는 일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 글은 월간양돈 2002년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민국양돈**